

하동군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하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 9. 9.

하동군의회의장 강 희 순

1. 조례명: 하동군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 하동군 모범운전자회의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교통질서 확립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주요활동 및 지원계획 수립 등(안 제3조 및 제4조)
- 다. 지원 신청 및 정산(안 제5조)
- 라. 지도·감독 및 평가(안 제6조)
- 마. 환수 조치 및 포상(안 제7조 및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6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하동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방법

- 1) 팩스: 055-880-2939
- 2) 하동군의회 홈페이지(<http://www.hdcl.go.kr>) 열린마당(의회에 바란다)
- 3) e-mail: star0208@korea.kr

붙임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하동군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 1부. 끝.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하동군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조항)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하동군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 따라 하동군 모범운전자회의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교통질서 확립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3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하동군 모범운전자회”(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란 제1호에 따른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경남지부 하동군 지회를 말한다.

제3조(주요 활동) 모범운전자회의 주요 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경찰 보조자로서 원활한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활동
2.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및 홍보활동
3.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의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 및 교통법규 준수
· 안전에 관한 계몽활동
4. 하동군 관내 각종 행사 시 교통소통 지원 및 보행자 안전 보호
5. 교통사고, 안전사고 및 긴급재난 발생 시 구조 지원 및 재난예방 활동

6. 모범운전자 회원의 역량 강화 및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

7. 그 밖에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적 필요에 따라 인정하는 활동

제4조(보조금 지원 등) ① 군수는 모범운전자회의의 원활한 사업 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 3조에 따른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
2. 교통봉사활동에 사용하는 차량의 보험료 및 운행에 필요한 경비
3. 봉사활동 수행에 필요한 피복, 안전 장비 구입 및 급식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모범운전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제3조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군수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3.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판단한 경우

제5조(지원 신청 및 정산)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하동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도·감독 및 평가) ① 군수는 보조금이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모범운전자회의 연간 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환수)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모범운전자회의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제8조(포상) 군수는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교통문화 향상에 기여한 모범운전자회 또는 그 회원에게 「하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